

의안번호	2204291
의 퇴 인	김한규의원
회 답 일	2024.10.14
추계번호	24D4049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 2(예산안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처장은 국가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안 등을 포함한다)과 그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8조의 2(예산안 등 관련 자료의 제공)	•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안 등을 포함한다)과 그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방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안 등을 포함한다)과 그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파일형식으로 게재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별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할 경우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2017년 사업별 설명자료 등 검색이 가능하도록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비용추계고도화 3차사업의 SW개발비는 4억 6,556만원이 소요되었음¹⁾
- 2017년 비용추계고도화 3차사업의 SW개발비 4억 6,556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7월)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경우, 2026년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으로 추계됨

□ 이와 같이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안 등을 포함한다)과 그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더라도 2026년 단년도에 5억 7,000만원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

1) 비용추계고도화 3차사업에는 예결산시스템 구축 이외에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예결산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